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. 8. 30 선고 2019가합10084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대전고등법원 2020. 5. 7 선고 2019나14668 판결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. 8. 30 선고 2019가합100847 판결

전문

원 고 1. A

2. B

3. C

4. D

5. E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형욱

피 고 1. F

2. G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

담당변호사 정진

변론 종결 2019. 7. 5.

판결 선고 2019. 8. 30.

주 문

1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주위적 청구취지

가. 피고 F은,

1) 원고들에게 각 3,284,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6. 27.부터 2019. 2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2) 원고 D에게 17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 G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1/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다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4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. 24.부터 2019. 2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예비적 청구취지

가. 피고 F은,

1) 원고들에게 각 3,284,8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6. 27.부터 2019. 2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
2) 원고 D에게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

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피고 F와 피고 G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8. 1. 12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다. 피고 G는 피고 F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8. 1. 23. 접수 제54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라. 피고 F은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1/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마. 피고 F은 원고들에게 각 156,478,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. 1. 24.부터 2019.2. 25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망 H 재산의 상속 관계

1) 망 I(1989. 8. 22. 사망), 망 H(1995. 4. 5. 사망)은 부부로 J, 피고 F, 원고들, K을 자녀로 두고 있었다.

2) J, 피고 F, 원고들, K은 망 H 사망 후 망 H의 소유였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토지1)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각 토지'라 한다)를 피고 F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.

피고 F은 1995. 10. 4.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이 사건 각 토지의 권리관계 변동

1) 별지 1 목록 제6항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아산시 L 전 17m³, M 전 135m³는 2015년 6월경 대한민국에 수용(협의취득)되었고, 피고 F은 보상금으로 2015. 6. 24. 19,709,230원(이하 '이 사건 보상금'이라 한다)을 수령하였다.

2) 피고 F은 2018. 1. 12.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신의 딸인 피고 G에게 증여하고 2018. 1. 23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3) 피고 G는 2018. 4. 27. N 주식회사에 별지 1 목록 제2,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,000,000원, 채무자 피고 G, 근저당권자 N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 내지 4, 8, 15호증, 을 제1, 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들 청구의 요지

가. 주위적 청구

1)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청구

가)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실 피고 F 및 원고들이 각 1/6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인데, 다만 원고들이 향후 처분의 편의를 위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이를 피고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.

나) 그런데도 피고 F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보상금 19,709,230원을 단독으로 수령하였으므로,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그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3,284,871원(19,709,230원 ÷ 6, 원 미만 버림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다) 또한 피고 G가 위 1. 나. 2)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 대한 채권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위증여는 무효이다. 따라서 피고 G는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/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라) 또한 피고들은 명의신탁에도 불구하고 위 1. 나. 3)항에서 본 것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므로,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인 각 40,000,000원(채권최고액 240,000,000원 ÷ 6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

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원고 D의 체납 세금 관련 청구

피고 F은 원고 D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17,000,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므로, 원고 D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17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예비적 청구

1)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청구

가) 피고 F은 명의신탁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보상금 19,709,230원을 단독으로 수령하였으므로,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그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3,284,871원($19,709,230\text{원} \div 6$, 원 미만 버림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주위적 청구와 같음).

나) 피고 F이 피고 G에게 위 1. 나. 2)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은 위 보상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 및 체납 세금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 D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그중 원물반환이 가능한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 G는 피고 F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다)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, 피고 F은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각 1/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라) 피고 F은 명의신탁 토지인 별지 1 목록 제2, 3항 기재 각 토지를 피고 G에게 증여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,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위 각 토지 가액의 각 1/6에 해당하는 156,478,500원($938,871,000\text{원} \div 6$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) 원고 D의 체납 세금 관련 청구

피고 F은 원고 D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20,000,0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므로, 원고 D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2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청구[위 2. 가. 1)항, 2. 나. 1)항]

1)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5, 6, 10, 11, 12,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/6 지분의 소유자로서 해당 지분을 피고 F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가) 피고 F은 망 H의 사망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세금을 전적으로 부담해왔던 것으로 보인다.

나) 등기권리증 역시 망 H의 사망 이후 피고 F이 계속 보관하다가 피고 2017년경 F이 수감되면서 비로소 이를 피고 C에게 맡겼다.

다) 2017년 이후 피고 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에게 분배하는 방안이 논의 되기는 하였으나, 그것이 명의신탁의 해지를 이유로 반환하려고 한 것인지, 아니면 해당 토지에 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이를 이전하려고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. 오히려 피고 F의 처 0 및 피고 G의 문자메시지 내역(갑 제5, 11호증)에는 '해당 토지를 채권자들에게 넘겨주느니 차라리 가족들인 원고들이 받아가는 것이 낫겠다'는 뜻이 내포되어있는 대화가 포함되어있다.

라) 그 외 ① 피고 F의 확인서(갑 제6호증)는 '재분할 상속'과 관련한 업무에 협조하겠다는 것으로, 이를 두고 피고 F이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에에는 부족하다. ② 피고 C과 J의 처 P과의 대화(갑 제10호증)에서도 명의신탁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. ③ 각 원고들의 진술(갑 제12호증)은 사건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. ④ Q 이장 R의 진술(갑 제16호증)은 R가 원 · 피고들의 가족 내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주로 진술하고 있어 증명력이 낮다.

2) 그렇다면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,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.

나. 원고 D의 체납 세금 관련 청구

갑 제12-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F이 원고 D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체납한 사실 및 그 액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 D의 이 부분 주위적, 예비적

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[한편 2. 나. 1) 나)항 기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원고 D의 체납 세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있는데, 위와 같이 해당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역시 이유 없다]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,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최보원, 판사 정재우, 판사 김가영

별지 1

목 록

1. 충청남도 아산시 전 655㎡
2. 충청남도 아산시 답 1876㎡
3. 충청남도 아산시 답 2795㎡
4. 충청남도 아산시 답 1837㎡
5. 충청남도 아산시 답 3050㎡
6. 충청남도 아산시 전 261㎡

별지 2

목 록

1. 충청남도 아산시 전 655㎡
2. 충청남도 아산시 답 1837㎡
3. 충청남도 아산시 답 3050㎡
4. 충청남도 아산시 전 261㎡

1) 별지 1 목록 제6항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그 면적이 413m²였다가 2015. 3. 23. L, M로 분할되어 면적이 261m²가 되었는데,여기서는 분할 전 토지를 의미한다.